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
액을 부과대상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격 평가 및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복리시설의 산정 방법(안 제6조)

나. 법률 용어 정비 및 근거 조문 명확화(안 제6조, 제9조,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 - 3392/3386
- 팩스 : (044) 201 - 5532
- 전자우편 : cbhong@korea.kr, pkm0903@korea.kr